

주의사항

- 확인서 반송 전에 단독 세대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지급 대상 외입니다.
- 세대주가 부양하고 있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분을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우편 사고(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음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통우편이 아닌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 자비로 부담하시고 우체국 창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 본 급부금의 신청에 관한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세대주 급부와 어린이 가산은 동일 계좌로 송금됩니다.
송금 명목은 ‘コウベシクラシエンリンジトクベツキュウフキン’ 입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전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급부금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까지 수속을 마쳐 주십시오.
(WEB) 2025년 5월 27일 중 (우편) 2025년 5월 27일 소인 유효
- 확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 급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허위 확인 및 신청을 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거,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의 사취에
주의하세요!

‘보이스 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 주십시오. 고베시에서는,

- ATM (현금자동인출기) 조작을 요구하는 것
- 지급을 위한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는 것
- 신용카드나 예금통장을 달라고 하는 것
-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전화, 우편물, 메일이 왔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상담 전용전화 #9110) 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신청 및 구청에 상담 창구는 없습니다.

고베시 급부금·정액감세 콜센터

TEL : 078-771-7201

〈접수 시간〉 8:45~17:30 (토일공휴일 제외)

틀거나 말하기가 부자유한 분의 상담은 여기로
(해당하지 않는 분의 이용은 삼가 주십시오.)

FAX : 078-771-5285

이메일 주소:

kobe_rinjitokubetu_kyufukin@os.persol-bd.co.jp

*여러 언어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Multilingual support

[Korean, Chinese, English, Spanish, Portuguese,
Tagalog, Vietnamese, Nepali]

TEL : 078-771-7201

Reception hours : 8:45~17:30

(Except for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최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Foreign languag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website.

神戸市暮らし支援臨時特別給付金

검색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안내

(물가 상승 대응 중점 지원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을 활용한 급부금)

2024년도 주민세 과세 상황에 근거해 1세대당 3만엔에 더해, 18세 이하 대상 아동에 대해 1인당 2만엔을 지급합니다.

‘WEB(e-KOBE※24시간 신청 가능)에서 수속’ 또는 ‘(동봉된)확인서의 반송’ 이 없는 경우 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청 및 시청에 상담 창구는 없습니다.

확인서(문의) 번호

※확인서 우측 상단에 기재



※신청 후, 지급 상황 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문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지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 상황 조회는 여기로]

지급 요건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대상 세대〉

- ①기준일(2024년 12월 13일)에 고베시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대
- ②세대 전원이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일 것
- ③세대 전원이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자녀, 부모 등)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④세대 안에 주민세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지만 미신고인 사람이 없을 것
- ⑤고베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급부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

※세대주가 부양하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분의 급부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①기준일(2024년 12월 13일)에 급부 대상 세대의 세대주와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18세 이하 아동

※18세가 되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아동(2006년 4월 2일 출생 이후)

②기준일의 다음날(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태어난 신생아
아래의 경우는, 콜센터(TEL: 078-771-7201)로 연락해 주십시오.

- 세대주가 부양하고 있지 않는 아동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표 주소지가 다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기준일(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신생아가 태어난(예정 포함) 경우
※신생아가 태어난 경우, 태어난 세대의 과세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급권자 지급 요건을 만족한 세대의 세대주

●급부금액 1세대 당 3만엔 ※동일 세대에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을 경우, 대상 아동 1인당 2만엔이 가산됩니다.

●지급방법 WEB 신청 또는 확인서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 마감일 (WEB) 2025년 5월 27일 중 (우편) 2025년 5월 27일 소인 유효
※지정된 지급 계좌로 송금이 완료되지 않고, 또한 2025년 6월 20일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급부수속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WEB 수속 ‘e-KOBE(고베시 스마트 신청 시스템)’에 의한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뒷면 ‘신청의 과정’ ①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편 수속 동봉된 확인서를 기입하여 우편 발송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뒷면 ‘신청의 과정’ ②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속마감일

①WEB(e-KOBE) 수속마감일➡ 2025년 5월 27일 중

②우편 반송마감일➡2025년 5월 27일 소인 유효

신청의 과정 이하 ①②중 하나의 방법으로 수속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고베시 생활지원 임시 특별급부금 급부 수속을 해 주십시오.

① WEB(e-KOBE) 수속
※ 반드시 아래 2차원 코드로 접속해 주십시오.

e-KOBE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화면 우측 상단의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해 주십시오.

- 확인서 앞면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확인서(문의) 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새로 입금 계좌의 등록 또는 확인서에 기재된 계좌로부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서류의 업로 드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서류^{※1}
 -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 대리인의 본인확인 서류^{※1} [대리인의 계좌로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만]



【 e-KOBE 접속
전용 2차원 코드 】

② 우편 수속

**확인서 앞면에 기입된 계좌로
입금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필요한 것

- ## ● 확인서

제출 (우편)

- 확인서 앞면에 자필서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반송용 봉투로 송부해 주십시오.

또는

확인서 앞면에 계좌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입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필요한 것

- 확인서(뒷면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세대주 본인확인 서류 사본※¹
- 입금 계좌를 확인할수 없는 서류의 사본※²

계좌 명의가 세대주와 다른 경우

- 대리 수급하는 부의 본인확인 서류의 사본※1

제출 (우편)

-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회신용 봉투로 발송해 주십시오.

※1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 변경 후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면도 첨부해 주십시오. 또한, 서류의 유효기간에 주의해 주십시오.

※2 계좌 명의가 가타카나인 경우에도 일부 캐쉬 카드에서는 성함이 영문자 표기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정 계좌 내용(가타카나의 계좌 명의 등)을 알 수 없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WEB 신청 또는 확인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1개월 정도 후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청 개시 직후에는 다수의 회신이 예상되므로, 접수에서 입금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우편 혹은 메일(WEB 수속일 경우에만)로 연락드리므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화번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전화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 기입방법 **A** (필요에 따라 **B**~**E** 포함)에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예【앞면】

1 世帯主（受給権者）

令和6年 12月13日締切 世帯主氏名	コウベ タロウ 神戸 太郎	住所 兵庫県神戸市中央区加藤町6丁目5-1
生年月日	平成12年12月31日	

基準日（令和6年12月31日）において、神戸市の住民基本台帳に登録されている方

■ こども加算対象児童

令和6年12月13日時点で神戸市に住民登録されている児童を印字しています。扶養していない児童がいる場合は二重線で取り消してください。
本確認書の提出までに新生児が生まれた場合等、下記にお名前がない場合はコールセンター（078-771-7201）までご連絡ください。

No.	氏 名	生年月日
1	神戸 真知子	令和●年●月●日
2	神戸 花子	令和●年●月●日
3	神戸 一郎	令和●年●月●日
4	神戸 愛	令和●年●月●日
5	神戸 太郎	令和●年●月●日
6	神戸 道子	令和●年●月●日
7	神戸 礼子	令和●年●月●日
8		

※児童数および金額に訂正が必要な場合は、1

支給額	世帯主3万円＋ 18歳以下の児童 8 名×2万円＝ 19 万円	⇒
-----	------------------------------------	---

B=2

(訂正後) 世帯主3万円＋ 18歳以下の児童 6 名×2万円＝ 15 万円
--

記載内容に相違なく、また本確認書に記載の要件・注意事項等も確認しました。
全ての内容に間違いのないことを暫め、同意のうえ、受給を希望いたします。

A

世帯主氏名 (自署)	神戸 太郎	確認日（記入日） ▲▲▲▲年 ▲▲月 ▲▲日 日中に連絡可能な連絡先 (000) 000 - 0000
---------------	-------	--

※自署が困難な方は、代筆

2 受取方法について

[A] 下記金融機関口座への振込を希望 ※神戸市が口座情報を取得した後に登録・変更された場合は反映出来ておりません。

支給口座	振込口座が確認できませんでした。*****
口座名義	裏面に受取口座と必要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수취 방법에 대해서】

- ① 2에 기입된 계좌로 송금을 희망하시는 경우**
※계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앞면 자필서명란 A에 기재 후, 이 확인서를 반송용 봉투로 반송해 주십시오.
- ②계좌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음/계좌를 변경하고 싶음/대리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앞면 자필서명란 A에 기재하는 것에 더해 뒷면에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하 기입예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입예【뒷면】

かんばん

【C】 表面 [A] とは別の金融機関口座への振込を希望（下記に必要事項を記入）

① 金融機関（ゆうちょ銀行を除く）へ振込

金融機関名	支店名	預金種別	金融機関コード	支店コード
1.銀行 5.振替 2.定期 6.新振替 3.特約 7.定期通 4.他債 8.出金	本文送 本支所	普通 当座 口座番号（右つ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口座名義（カタカナ） コウベ ハナコ

② ゆうちょ銀行へ振込 貯金通帳の見取り左上またはキャッシュカードに記載された記号・番号をご記入ください。

種別	記号（5桁または6桁）	通帳番号（7桁）	番号	口座名義（カタカナ）
普通	1 0 ¹⁶		1	

※6桁目がある場合はご記入ください。

上記口座名義が、世帯主と異なる場合は **3**へ

上記口座名義が、世帯主と同じ場合は **4**へ

【C】 金融機関口座での受け取りができない方は、コールセンター（078-771-7201）へご連絡の上、お手続きをお願いします。
※受け取り日時の調整が必要なため、口座での受け取りよりもお手続きに時間がかかります。ご了承ください。

3 代理受給を行う場合（世帯主とは異なる口座に振り込む場合のみ、世帯主の方が記入）

下記の者を代理人と認めます。

世帯主氏名
(自署)

神戸 太郎
(世帯主と異なる方)

代理人氏名	フリガナ	口座名	代理人の続柄	代理人 生年月日	0000 年 00 月 00 日
神戸 花子	コウベ ハナコ	〒000-0000 都 道 府 県	妻	0000 年 00 月 00 日	0000 年 00 月 00 日
				電話番号 (000) 000 - 0000	0000 年 00 月 00 日

※自署が困難な方は、代筆可

※自署が困難な方は、代筆可

대리수급에 관하여

고베시 생활 지원 임시 특별 급부금의 수급권자는 세대주가 됩니다만, 세대주가 급부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주를 대신하여 급부금 대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류에 대해서

※아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은 WEB(우측 기재 2차원 코드)에서 사용 가능한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증명서 • 운전면허증 • 재류카드(외국 국적자만)
• 마이넘버카드(앞면:사진이 있는 면만 ※뒷면의 사본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 휴일, 야간 등 수급증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여권



사용 가능한 본인확인 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